

의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15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8. 9. 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제정비와
자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직위 중심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경쟁력 있는 구성을 지향하는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정원 190명을
감축(1,518→1,328명)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 : 1,492 → 1,306명(△186명)
 - 구본청 : 1,024 → 885명(△139명)
 - 직속기관(보건소) : 93 → 83명(△ 10명)
 - 동 : 375 → 338명(△ 37명)

※ 부구청장(3급) 국가직→지방직 전환,
방범원 97명 정원외현원 정원 인정

- 의회사무국 : 26명 → 22명(△ 4명)

(2)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인성

다.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21조('98. 8.31 대통령령 제15875호)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3) 합의 - 서울시 시정12200-600('98. 6.22)호로 자치구조직개편
추진지침시달 및 서울시 조직12200-829('98. 8.29)
호로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시달
- 서울시 조직 12200-830('98. 8.29)호로 자치구조직
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 통보

2. 검토결과

가. 서울시 시정12200-600('98. 6.22)호에 의거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 서울시 조직12200-829('98. 8.29)호로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시달
- 서울시 조직12200-830('98. 8.29)호로 자치구조직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 통보가 있었으며,
- 21세기를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 내용을 검토한바,

(1) (안2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으며,

- 현행조례 제2조에는 1호 구본청 926명, 2호 구의회사무국 26명,
3호 직속기관(보건소) 98명, 4호 동 375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 개정안에는 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호 의회사무국 정원 22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88명, 구의회에서 4명을 감축하여 총 92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조례상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외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한 방범원 97명과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인정된 1명등 98명의 인력을 포함할 경우 구청, 보건소등 집행기관 현원이 1,492명이며, 의회사무국이 26명으로서 서초구 공무원이 총 1,51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감축비율은 12.51%임.

(2) 이를 제안된 조례 주요골자에 의하여 기관별로 검토하면,

- 구 본청은 조례상 정원외 별도 현원을 포함, 총 인력 1,024명을 885명으로 조정하고 139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3.57%이며,
-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93명을 83명으로 조정 10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0.7%이며,
- 동은 375명을 338명으로 조정 37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9.8%이며,
- 구의회사무국은 26명을 22명으로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5.38%로서 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안부칙 제2조)에는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 별정직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울시 조직12200-829('98. 8.29)호로 시달된 정원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중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운영에 관한조례 규칙기준에 의거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다. 위 정원조례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첨부사항

- 관련법령
- 신구조문대비표.
-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시달 조작12200-829('98. 8.29) 공문 1부.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8. 8.31 대통령령 제15875호)

○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초과현원)

※ 부칙 제4조 원에 관한 경과 조치기준(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원의총수) 서울특별시 서</u> <u>초구의 본청·의회사무기구·소속</u> <u>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u>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구본청 : 926명 2. 구의회사무국 : 26명 3. 직속기관 : 93명 4. 동 : 375명</p>	<p><u>제2조(정원의총수) 서울특별시 서</u> <u>초구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u> <u>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u> <u>같다.</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 2. 의회사무국 정원 : 22명</p> <hr/> <p style="text-align: right;">총 계 : 1,328명</p>

관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1 / 전송 731-6309 /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시청본관4층) 과장 : 정효성 사무관 박홍래 담당 : 조승곤

문서번호 조직 12200 - 829

시행일자 1998. 8. 29.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기구정원규정 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시달

1. 행정자치부 자제 12200 - 292 (98.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등이 '98. 8.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공포(공포예정 : '98. 8. 31)를 앞두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자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조직관련 조례·규칙개정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조기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구정원규정개정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결 기획예산실장 탁병오)

수신처 :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구 01-25

문서번호	자제12200-292
보존기간	10년

1998. 8. 28

機構定員規程改正令 施行指針

기구정원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니 조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
하고 동시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조직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

[별 첨1]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운영에 관한 조례규칙기준

<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령 >

부칙 제4조(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 정원조례 및 규칙의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할 사항

<정원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1급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조 단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단축 운영가능

<정원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별정직 정원 ○○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인구 10만미만		15개이내
	인구 10만미만(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실·국이내	17개이내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	2실·국이내	17개이내
	인구 15만이상 20만미만	3실·국이내	18개이내
	인구 20만이상 30만미만	4실·국이내	22개이내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	5실·국이내	23개이내
	인구 50만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실·국이내	25개이내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 (구를 설치한 시)	4실·국이내	20개이내
구	인구 70만이상(구를 설치한 시)	5실·국이내	22개이내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미만	5실·국이내
	인구 50만이상	5실·국이내	24개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5만미만	3실·국이내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	3실·국이내	15개이내
군	인구 50만이상	4실·국이내	16개이내
	옹진군·울릉군		7개이내
	인구 3만미만		8개이내
	인구 3만이상 5만미만		9개이내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11개이내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		13개이내
	인구 15만이상		15개이내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